

의안번호	제 84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
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10월 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84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10월 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(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)가 개정('20. 6. 9.) 및 시행('20. 9. 10.)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생략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
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소방시설공사업법

제21조(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)

-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.
-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.

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

제11조의2(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)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
2.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
3.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
4.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
 - 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9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
 - 나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

행령」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
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

6.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·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
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